

 금융위원회	<h1>보 도 자 료</h1>			
	보도	2020. 3. 30(월) 석간	배포	2020. 3. 27(금)
책 임 자	금융위 금융혁신과장 윤 병 원(02-2100-2530)	담 당 자	성 보 경 사무관(02-2100-2531) 서 승 리 사무관(02-2100-2536)	
	금감원 핀테크혁신실장 김 용 태(02-3145-7120)		김 익 남 팀장(02-3145-7135)	

제 목 : P2P업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안 예고

1 | 개 요

-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건전한 육성과 이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「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(이하 'P2P법')」 시행('20.8.27)을 위해,
 -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온라인투자연계금융(이하 'P2P')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.
-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번 P2P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의 제정을 통해 「P2P법」 시행이 P2P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회복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- 하위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◆ 법령에서 위임한 P2P업 진입·영업행위 규제, 이용자 보호 제도 및 관리·감독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

① **(등록절차요건)** 기존 금융업 수준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갖춘 경우에만 P2P업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 (규정안 제4조 및 제5조)

○ 사기 등 범죄가 의심되어 소송·수사·검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 P2P업 등록 심사를 보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
* (타 입법례) 은행·저축은행법(감독규정), 자본시장법(시행규칙)

○ 등록 신청시 연체상태에 있는 연계대출 채권의 건전성을 평가하고 관리방안도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.

○ 아울러, P2P법 시행 후 기존에 영업중인 P2P업체*들의 미등록·불건전 영업행위가 최소화되도록 'P2P대출 가이드라인'을 법령과 최대한 동일한 수준으로 개정할 계획입니다.

* 기존 P2P업체들은 「P2P법」 부칙에서 등록에 필요한 준비등을 위해 등록유예기간(~'21.8.26)을 부여하였으며, 동 기간 이후 미등록 영업시 처벌 대상

- P2P업 등록 심사 과정에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고려하는 한편,

- P2P협회·금감원에서 등록업체 조회서비스를 운영하여, 이용자들이 미등록업체를 통한 거래에 유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.

② **(정보공시·제공강화)** 이용자들이 P2P플랫폼 선택이나 투자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보공시·상품정보 제공 사항등을 구체화 하였습니다. (규정안 제8조, 세칙안 제11조)

○ P2P업체의 경영공시사항으로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(금융사고·연체율 15% 초과·부실채권 매각 등)를 포함하고,

○ 연계투자 상품의 유형별로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를 세분화하여 규정*하였습니다.

* (예) 부동산 PF대출: 시행사·시공사 정보, 담보물가치의 증빙자료 등
부동산 담보대출: 담보물 가치의 증빙자료, 선순위 채권 현황 등

③ **(연체율 관리 의무)** P2P업체가 연체·부실 위험이 높은 대출을 취급하여 발생하는 투자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, 연체율이 높아지면 일부 영업방식이 제한되거나 공시·관리 의무가 부여됩니다.

(규정안 제8조·제10조·제12조)

연체율	10% 초과	15% 초과	20% 초과
주요 내용	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새로운 연계투자 제한	경영 공시	리스크 관리 방안 마련·보고

④ **(고위험 상품 금지)** 투자자 보호등을 위해 P2P플랫폼에서 취급할 수 없는 고위험 상품의 유형을 규정하였습니다.

(규정안 제13조, 세칙안 제5조)

- 투자자들이 개별 연계대출의 위험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화상품 (다수의 대출채권을 혼합한 상품), 가상통화·파생상품 등 위험성이 높은 자산을 담보로 한 연계대출·연계투자 상품과
- 연체·부실 가능성이 높은 차입자(대부업자)에 대한 연계대출 취급 등을 제한하였습니다.

⑤ **(손해배상책임)** 연계대출규모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준비금 규모를 차등*하고, 등록취소·폐업시에도 이를 유지**하도록 하였습니다.

(규정안 제31조)

* (연계대출규모 300억원미만) 5천만원이상, (300억원이상~1,000억원미만) 1억원이상, (1,000억원이상) 3억원이상

** 연계대출계약·연계투자계약에 따른 거래를 종결하기 전까지 유지, 손해배상책임 소송 진행시 그 결과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지급이 종료되는 날까지 유지

⑥ **(업무보고서)** P2P업체들의 영업현황·재무현황·지배구조·특수관계인과의 거래등을 분기별(연계대출·연계투자현황은 월별 보고)로 감독기관에 보고할 의무를 구체화하였습니다. (규정안 제36조, 세칙안 제13조)

7 (수수료) 차입자에게 수취하는 P2P 플랫폼 수수료는 「대부업법」의 최고이자율(24%)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만(법 제11조제2항),

- 대출망 금융 활성화 등을 위해 최고이자율 산정에서 제외되는 부대비용의 범위를 「대부업법」*보다 넓게 인정하여, '담보물 점유·보관·관리 비용'(예: 창고비용)등을 추가하였습니다. (규정안 제9조)

* 「대부업법 시행령」의 부대비용: 담보권 설정비용, 신용조회비용, 조기상환 금액의 1% 이내(여신금융기관에 한하여 적용)

3 시행령 수정안

◆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(1.28~3.9) 중 제기된 의견등을 고려하여, 시행령 수정안에 반영한 주요 내용

1 (겸영업무) P2P업체들의 건전한 영업관행과 이해상충방지체계가 충분히 정착될 때까지 금융투자업 등은 제외하고 겸영업무가 허용될 예정입니다. (시행령 안 제13조)

시행령 입법예고(안)	시행령 수정(안)
1. 신용정보법(신용평가모형의 개발·판매업무)	1. 신용정보법(본인신용정보관리업)
2. 금융투자업	2. 추후 검토
3. 금융기관 보험대리점	3. 삭제
4. 전자금융업	4. 동일
5. 대출의 중개 및 주선업무	5. 동일

2 (투자한도) 시행령의 투자한도(일반 개인투자자)는 최고 투자한도로 규정하되, 우선 감독규정을 통해 투자한도를 낮추어 운영하고, 향후 P2P업의 건전한 성장과 이용자 보호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조정을 검토할 예정입니다. (시행령 안 제27조, 규정안 제33조)

* 최근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·소상공인·개인신용 대출의 연체·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투자자 피해에 대한 우려가 다수 제기

	現 시행령 입법예고(안)	감독규정(한도 축소(안))
일반개인투자자	(동일 차입자) 5백만원 (P2P투자전체) 5천만원 * 부동산은 3천만원 한도	(동일 차입자) 5백만원 (P2P투자전체) 3천만원 * 부동산은 1천만원 한도

4

기 타

◆ 법정 P2P협회·중앙기록관리기관 등 P2P업에 필요한 인프라가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

* 협회·중앙기록관리기관 관련 규정은 법 공포 후 1년6개월 이내('21.5.26까지)에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준비상황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조속히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

① (협회) P2P협회가 조속히 설립되도록 유도하여, 협회의 자율규제 기능 등을 통한 건전한 영업관행이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.

* 3월부터 설립준비위원회·설립추진단 운영을 본격화하고 있음

*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(법 제37조)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 따라 등록된 업체에게 가입할 의무가 부여되는 기관으로 회원지도, 자율규제, 민원처리, 표준약관 제·개정 등의 업무를 수행

② (중앙기록관리기관) 중앙기록관리기관의 선정공고 및 심사·선정등 일정도 금년중으로 차질없이 추진하여, 투자한도 관리 시스템이 조속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
* 중앙기록관리기관(법 제33조)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거래정보를 집중·관리하는 기관으로 차입 정보, 투자 정보, 차입자 및 투자자에 관한 정보를 기록·관리하고, 온라인투자연계 금융업자 등의 위탁을 받아 차입한도·투자한도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

5

향후 계획

□ 상기 P2P업 감독규정·시행세칙(안)은 규정제정예고(3.31~4.30)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상정·의결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.

※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(<http://www.fsc.go.kr>/정보마당/입법예고·규정변경예고) 및 금융감독원 홈페이지(<http://www.fss.or.kr>/법규정보/금융감독법규/세칙제·개정예고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변인
prfsc@korea.kr

